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50
----------	-------

발의연월일 : 2019. 9. 24.

발의자 : 윤관석 · 이후삼 · 조웅천

신창현 · 김정우 · 김경협

안호영 · 윤준호 · 박재호

안규백 의원(10인)

제안이유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상 세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2항제11호)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 항목의 하나로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광역버스 사업)에 대

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 배분비율 조정(안 제8조제1항제1호)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 전입액을 1천 분의 800에서 1천분의 730으로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제22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

제8조제1항제1호 중 “800”을 “73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략)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0. (생략)</p> <p><u><신설></u></p> <p>11. (생략)</p> <p>③ (생략)</p> <p>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p> <p>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u>800</u>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p>	<p>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u>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u> <u>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u> <u>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u> <u>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u> <u>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u> <u>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u> <u>송사업에 대한 보조</u></p> <p><u>12. (현행 제11호와 같음)</u>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 ----- -----.</p> <p>1. ----- ----- ----- <u>730</u> -----</p>

경세전입액"이라 한다)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